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석사학위논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 대 욱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정진성

이 논문을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대욱

김대욱의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8월

위원장           임  현  진           (인)

부위원장           한  신  갑           (인)

위원           정  진  성           (인)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대욱

## 국문 초록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인권제도와 규범의 확산이 실제 인권 상황의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표이다. 인권 결정 요인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크게 국가 내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와 외부적 요인에 주목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내부적 요인과 인권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은 경제발전과 같은 국가 내부 상황의 변화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국제적 조건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세계문화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인권의 확산 과정은 세계사회이론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각국이 인권 규범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 세계적인 인권 문화와 모델의 확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제 인권조약의 비준, 국제비정부단체와의 연계, 인권관련 주요 국제회의 참여 등이 인권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렇다면 인권제도와 규범의 확산은 실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도 이어졌을까? 여러 연구들은 인권조약의 비준이 인권 상황과는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인권의 확산이 실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수준으로 구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먼저 국가 수준에서의 인권의 확산은 국가인권기구 설립, 국제 인권조약비준, 국제비정부단체 참여 수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국제 인권레짐의 핵심적 제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한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국제 인권규범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 인권조약의 비준 여부도 국제 인권레짐 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한편 국제비정부단체는 세계 문화와 담론의 주된 매개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다음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수준에서의 인권의 확산은 인권 관련 주요 국제회의의 개최, 지역에서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국제 인권조약 비준 누적 수를 통해 측정한다. 국제회의는 세계 문화가 확산되는 장으로서 대규모 국제회의를 통해 인권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이 공론화된다. 한편 세계사회이론가들은 규범의 확산을 규범 케이스케이드 및 유행으로 개념화한다. 해당 지역에서 국제 인권조약을 비준하거나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한 국가가 많아질수록 국가들이 이를 의식하여 인권 개선을 꾀하게 된다는 가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각각 7점 척도인 정치적 자유 지수와 시민적 자유 지수의 평균값을 해당 해의 인권 지수로 반영하였다. 독립변수 가운데, 국가인권기구 설립 여부는 아프리카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의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다. 인권조약 비준 여부는 6개의 주요 국제 인권조약을 기준으로 삼았다. 각국이 가입한 국제 비정부단체의 수는 국제조직연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인권관련 주요 국제회의는 1993년 비엔나 인권회의와 1996년 제1회 아프리카 국가인권기구 컨퍼런스를 선정하였다. 지역에서의 인권 확산 변수는 해당 연도에 각국이 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한 국가의 수를 집계하여 누적 숫자를 계산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내전 발발 여부, 인구는 통제 변수로 회귀모델에

포함시켰다. 대상 기간은 아프리카 지역 인권레짐 형성의 역사를 고려하여 1980년도부터 2009년까지로 설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국가 패널 데이터는 패널 개체가 모집단 자체이고, 시간 변동 변수가 주로 활용되므로 고정효과 모델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수준에서의 인권의 확산과 관련된 변수들 가운데 국가인권기구 설립, 국제 인권조약 비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국제비정부단체 가입 변수는 인권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역 수준에서의 인권의 확산과 관련된 변수들 가운데에는 국가 인권기구 설립 및 국제 인권조약 비준의 지역 누계 변수가 유의미했다. 통제 변수 가운데에는 내전 변수가 일관성 있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인권 제도와 규범의 확산이 실제 인권 상황의 개선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 수준에서의 인권 제도와 규범의 확산이 인권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지역 인권레짐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인권 확산과 인권 상황의 디커플링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주제어:** 인권, 인권 레짐의 확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권 결정요인, 세계사회이론, 디커플링

**학번:** 2010-20094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이론적 논의 .....	5
제1절 인권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	5
제2절 이론적 배경: 세계사회이론 .....	9
제3장 연구 가설 .....	12
제1절 국가 수준에서의 인권제도 및 규범의 확산 .....	13
제2절 지역 수준에서의 인권제도 및 규범의 확산 .....	15
제4장 연구 자료 및 방법 .....	17
제1절 종속 변수: 인권 상황 .....	17
제2절 독립 변수: 인권 규범과 제도 .....	22
제3절 연구 방법 .....	26
제5장 분석 결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 결정요인 ..	28
제6장 결론 .....	31
참고문헌 .....	33
부록 1. 1990년대의 대표적인 인권 지수 개선/악화 국가 목록 .....	38
부록 2. 2000년대의 대표적인 인권 지수 개선/악화 국가 목록 .....	39
부록 3. 분석 대상 국가 목록 .....	40
부록 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인권조약 비준현황 ..	41
부록 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현황 ..	43
Abstract .....	45

## 그림 차례

그림 1. 1인당 국민소득 추이 비교: 1980-2009 .....	1
그림 2. 인권지수 추이 비교: 1980-2009 .....	3
그림 3.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현황 .....	4
그림 4. 인권의 확산 과정에서의 주요 행위자 .....	11
그림 5. 인권 결정 요인의 구분 .....	16

## 표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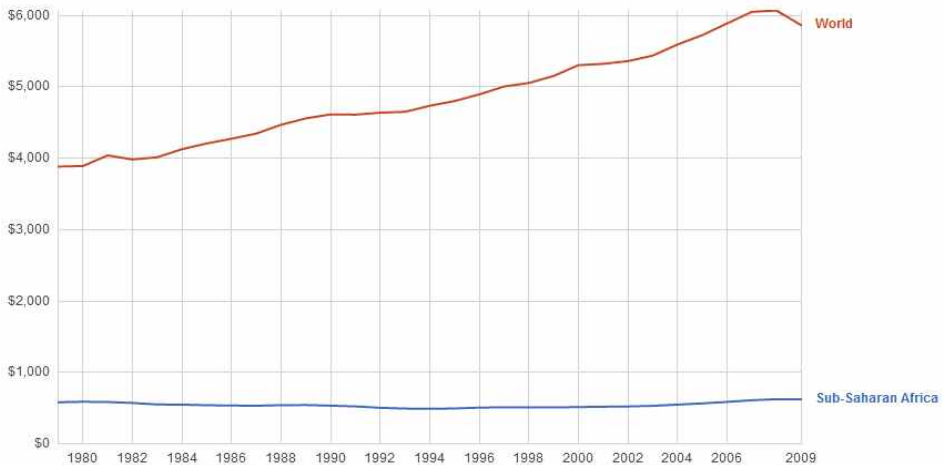
표 1. 주요 국제 인권조약 비준 현황 .....	3
표 2.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척도 .....	19
표 3.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의 시민적 자유에 대한 척도 .....	20
표 4. 활용 변수 목록 .....	25
표 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권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	30



## 제1장 서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는 여전히 빈곤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속한 48개국<sup>1)</sup> 가운데 33개국이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sup>2)</sup>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아래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는 1980년 이후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 지구적인 경제 성장의 흐름에서 여전히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림 1> 1인당 국민소득 추이 비교: 198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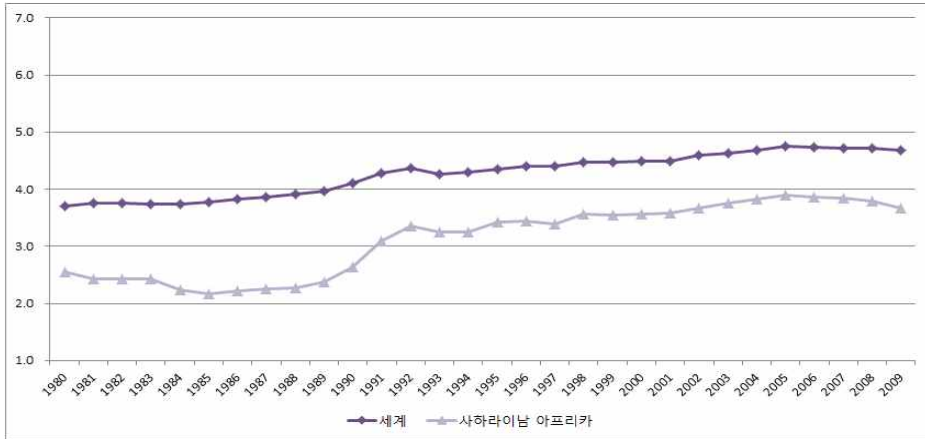
자료: 세계 개발 지표(WDI), 2000년 미국달러(불변기준)

-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일반적으로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아프리카 국가를 가리킨다. 북아프리카는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아랍과 더 밀접하다. 북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수단은 예외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로 분류한다. 2011년 독립한 남수단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최빈국의 분류 기준은 1971년 UN이 주도하여 도입하였다. 인구가 7천 5백만 명 이하인 국가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 인적자산지수, 경제지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 2011년 11월을 기준으로 모두 48개의 국가가 최빈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3개국, 아시아 9개국, 태평양 도서 5개국, 캐리비안 도서 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저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초기의 논의 흐름은 크게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대화론에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저발전을 국가 내부의 전근대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반면, 종속이론에 따르면 중심부 국가들의 수탈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경제 침체의 원인이다.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이론은 경제성장이 발전의 요체라는 전제를 공유한다(이연호 2009; 임현진 2006). 그런데 1980년대 이후 경제에 편중된 발전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986년 UN 발전권 선언을 계기로 점차 인권이 발전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 상황의 추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 지수는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게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전 세계적인 인권 상황은 시기에 따라서 개선과 후퇴를 반복해왔다(정진성 외 201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 상황은 1990년대 이후에는 전 세계적인 경향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프리덤하우스의 자유지수를 기준으로 작성한 <그림 2>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 상황은 1980년대의 침체기를 거쳐 1990년대 초반에는 급속하게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이 한동안 지속되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 상황이 다시 악화되는 추세이다.

<그림 2> 인권지수 추이 비교: 1980-2009



자료: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

그렇다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 인권 규범을 얼마나 받아들였을까? 우선 <표 1>의 주요 국제 인권 조약 비준 현황을 살펴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국제 인권조약의 비준율은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더 높다. 조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990년대에 주요 국제 인권 조약을 비준한 국가가 급증했다<sup>3)</sup>.

<표 1> 주요 국제 인권조약 비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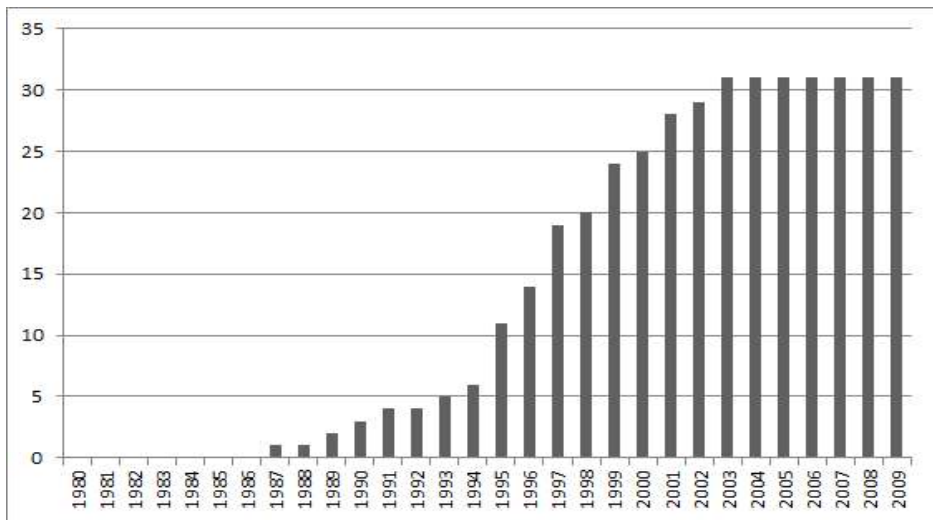
	전체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비준	미비준		비준율	비준	미비준		비준율
		서명	비서명			서명	비서명	
CERD('69)	170	5	15	88%	45/48	2	1	94%
ICCPR('76)	160	7	21	83%	46/48	2	0	96%
ICESCR('76)	153	7	28	79%	43/48	3	2	90%
CEDAW('81)	185	2	6	96%	46/48	0	2	96%
CAT('87)	138	11	35	72%	38/48	5	5	79%
CRC('90)	191	2	0	99%	47/48	1	0	98%

출처: <http://www.bayefsky.com/2012.3.5> 기준(2012.5.6 접속), 괄호 안은 효력 발생 시점. 남수단제외

3) 주요 국제 인권조약 비준 국가별 현황은 부록 4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노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은 해당 국가가 국제인권규범을 따르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런데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전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약 3분의 2 가 국가 인권기구를 설립하였다. 국제인권조약 비준과 국가인권기구 설립 현황을 근거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인권레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림 3>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현황



출처: 아프리카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 Koo(2009)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인권제도와 규범의 확산은 실제 인권 상황의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까? 인권제도와 규범의 확산이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졌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인권제도와 규범의 확산과 인권 관행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인권 개선에 있어 국가간의 차이를 낳은 요인은 무엇일까?

논문의 구성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우선 2장에서는 인권 결정요인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1절에서는 인권의 확산과 인권 결정 요인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2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이론적 배경으로 세계사회이론을 제시한다. 이어 3장에서는 세계사회이론(world polity theory)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역 수준으로 나누어 인권의 확산에 따른 실제 인권 상황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가설들을 제시한다. 4장은 본 연구에 활용된 연구 자료 및 방법론을 소개하는 장이다. 5장에는 분석 결과와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마지막 6장에서 본 연구의 함의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 제2장 이론적 논의

### 제1절 인권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인권 결정 요인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국가 내부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 외부적인 요인 특히 세계화와 인권 개선의 관계를 검토한 논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인권조약의 비준이 실제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사회학적 연구들은 인권과 관련된 조직, 컨퍼런스, 조약, 연구 결과, 관련 보도의 급증을 근거로 국제 인권레짐의 확장을 설명하고 있다(Koo and Ramirez 2009). 경제 발전과 같은 국가 내부의 요인과 인권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은 국가 내부 상황의 변화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인권 상황의 개선을 추동하는 국제적 조건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세계문화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우선 어떤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는지를 밝힌 초기의 연구들은 국가의 내부적인 요인들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선 Park은 삶의 질 지수, 도시화율, 복지지출, 민족 다양성, 기독교도 비율은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군사비와 교육 지출은 높을수록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Park 1987). Mitchell 등은 GNP가 높고, 영국 식민 통치 경험이 있으며 권위주의적 정부가 통치하는 국가에서 인권이 잘 보장된다는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Mitchell and McComick 1988). 한편 Henderson은 민주주의 확산과 경제 성장은 인권을 개선시키는 반면, 불평등의 확대와 인구 증가는 인권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Henderson 1991). 마지막으로 Poe 등의 연구 결과 가운데 좌파 정권이 우파 정권에 비해 인권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는 흥미롭다(Poe and Tate 1994).

한편 국가 외부적인 요인들 가운데는 세계화의 흐름이 인권 개선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검토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Smith 등은 다국적 기업의 활발한 활동이 인권 보장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Smith et al. 1999). de Soysa 등도 역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세계화가 모두 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de Soysa et al. 2011). 한편 여성의 사회권을 종속 변수로 한 Yoo의 연구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비준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지만, IMF 구조조정정책 적용 기간이 길어지면 인권 상황이 악화된다는 결과가 제출되었다(Yoo 2011).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국제 인권 조약 비준 여부가 인권 개선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Keith는 시민정치적권리협약 비준 여부를 독립변수로 활용한 연구에서 협약 비준국이 미비준국에 비해 인권 보장 수준이 높지만, 비준국에서의 조약 비준 전후의 인권 상황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Keith 1999). Hathaway는 UN의 주요 인권 조약 및 지역 인권 조약 비준 여부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인권조약 비준이 인권 개선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에서의 조약 비준은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Hathaway 2002).

Hafner-Burton 등의 연구는 국제인권조약 비준이 실제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무의미한 약속의 역설(paradox of empty promises)”으로 설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국제 인권조약들은 이행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은 인권 관행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어도 겉치레(window dressing)로 인권조약을 비준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비정부기구, 지역 인권단체와 같은 인권 옹호자들이 인권조약의 비준을 근거로 인권 침해국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함에 따라 실제로 인권이 개선된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부재한 국가에서 조약 비준은 오히려 인권을 악화시키는 반면, 시민사회 참여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인권 조약의 비준이 실제 인권 상황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 가능하다(Hafner-Burton and Tsusui 2005). 즉, 민주주의가 정착되었고, 사법부가 독립적이며, 시민사회가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인권조약의 비준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Hathaway 2002; Neumayer 2005). 다시 말하면, 독재정치가 횡행하고 시민사회의 발전이 미미한 국가들에서는 인권조약의 비준이 실제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권 레짐의 확산과 실제 인권 개선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 논문들은 세계사회이론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구정우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세계사회이론과 관련된 가설들을 동원하여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세계사회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제시된 국제회의의 개최,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세계밀도 및 지역밀도 증가, 국제인권조약 참여, 다양한 국제단체의 규범적 영향력 등의 변수가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었다(구정우 2007). 한편 Cole은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각국의 인권조약 비준에 대한 헌신의 정도를 실제 비준 여부, 유보 조항 유무, 강화된 모니터링 제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조약 비준에 대한 헌신의 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조약의 비준이 실제 인권 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졌다(Cole 2012).

그런데 인권 결정의 국제적 조건을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권 규범 및 제도의 확산과 실제 인권 관행 개선의 디커플링(decoupling)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인권은 규범적인 차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규범의 확산이 실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Hafner-Burton 등은 정책과 실행의 디커플링 즉, 인권조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제 인권레짐에 참여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원칙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것은 인권레짐의 유효성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인권 보호 책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Hafner-Burton et al. 2008).

이와 같은 연구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인권 결정요인의 파악에 기초가 된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경제 성장이 정치 안정의 기반이 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권이 개선된다는 근대화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채택한 연구들은 장기간 경제 침체에 빠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둘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인권 제도와 규범의 확산이라는 현상이 실제 인권 관행의 개선 여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셋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해당 지역인권레짐의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적인 연구 질문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인권의 확산이 실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졌는가?”로 설정하였다.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인권 규범과 제도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인권의 확산이 실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검토한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인권의 확산과 인권 상황의 개선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세계사회이론을 도입하였다.



## 제2절 이론적 배경: 세계사회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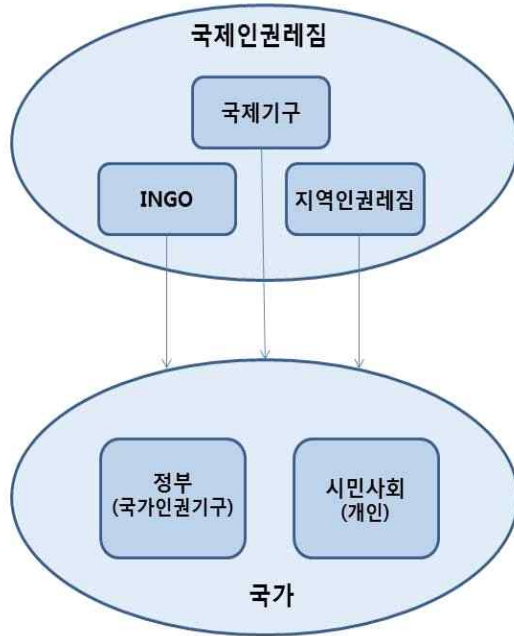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인권 제도와 규범의 확산이 실제 인권 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졌는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모든 개인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특히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인권의 전 세계적 확산의 출발점이 되었다(Wotipka and Tsutsui 2008). 여기서 “인권의 확산”은 인권 제도와 규범의 확산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이다. 인권제도의 확산은 인권 관련 국제 조약 비준 및 법의 제정,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같은 제도적 측면을 가리키며, 인권규범의 확산은 인권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 인권레짐의 원칙과 규범이 여러 국가들에 전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의 확산 과정은 이론적으로는 세계 문화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는 세계사회이론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세계사회이론은 신제도주의에서 발전한 이론으로 국민국가가 세계사회에서 통용되는 행위 양식을 받아들이고 동형화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세계사회이론에서 행위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틀(frame)에 의해 구성되는 정체(polity)로 여겨지기 때문에, 한 국가의 행위는 외생적(exogenous)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권 가치의 확산은 ‘세계 인권 문화와 모델의 확산’의 결과로 이해된다. 개별 국가들은 세계적인 표준(world standard)에 더 민감한 경향이 있으므로,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모델과 규범은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2차 대전 이후 인권은 세계 사회의 핵심적인 규범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인권 규범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는 그 정당성에 위협을 받고 국내외의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Boli and Thomas 1997; Meyer et al. 1997; 구정우 2007; Wotipka and Tsutsui 2008; Hathaway 2007; Koo and Ramirez 2009; Hafner-Burton and Tsutsui 2005; Cole 2012).

이와 같은 세계사회이론의 설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인권 제도와 규범의 확산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는 다른 대륙의 국가들에 비해 뒤쳐져 있지만, 국제 인권조약의 비준에는 더 적극적이다. 아무리 가난한 국가라도 인권조약 비준에 따른 최소한의 후속 조치는 하게 되는데 (Meyer et al. 1997), 이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된 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인권의 확산에 따른 인권 개선 메커니즘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국제 인권 조약의 비준, 국제비정부단체와의 연계, 인권관련 주요 국제회의의 참여 등을 주요 변수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면 국제 인권 규범이 손쉽게 국내로 전파되어 인권 상황이 개선된다는 것이다(구정우 2007). 이는 주로 국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국가의 입장에서 인권의 확산이 어떤 비용 및 이익을 산출하는지에 주목했던 합리주의적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Poe and Tate 1994; Moravcsik 2000).

인권의 확산 과정에서의 주요 행위자들을 아래 그림 4에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인권 확산에 따른 인권 상황 개선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국제 인권레짐의 영향을 받아 개별 국가의 인권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국제 인권레짐의 주요 행위자들은 국제기구, 국제비정부단체, 지역 인권레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제 인권 규범을 개별 국가들이 받아들이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한다. 반면 국가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를 중요한 행위자로 설정하였다. 인권의 증진과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기구는 인권 보호 및 개선에 있어 중요성이 크므로 별도로 표시하였다. 인권 개선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 의식 및 감수성의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민사회 내에 개인을 함께 표기하였다.

<그림 4> 인권의 확산 과정에서의 주요 행위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권제도와 규범의 확산이 실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졌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경험적 연구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인권조약의 비준이 실제 인권 상황의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권 침해 국가에 보호막 (shield)을 부여함으로써 인권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Clark 2010). 이런 관점에 따르면 국제 인권레짐의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 Hafner-Burton 등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 인권레짐의 부상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인권 보호에 대한 규범적인 압력을 받게 되고, 심지어 인권 침해국들도 적절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 조약을 비준하게 된다. 그러나 인권 침해국들은 인권조약 준수에 대한 국내적인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인권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디커플링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Hafner-Burton et al. 2008).

한편 Meyer 등은 국민 국가가 이상적 모델로서의 외부 문화를 완벽하게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커플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수용된 문화의 확산 과정이 다양한 층위와 과정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용된 일부 요소들은 국내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한편 세계 문화의 모델이 매우 이상화되어 있고 내부적인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공식적인 모델과 실제 관행 사이의 차이를 낳는 원인이 된다(Meyer et al. 1997). 한편 조약을 실제 이행해야 하는 국가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디커플링의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Clark 2010). 이와 같은 인권 규범 및 제도의 확산과 실제 인권 관행의 개선의 디커플링 문제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 제3장 연구 가설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인권의 확산이 실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 수준과 지역 수준에서의 인권제도 및 규범의 확산 가설을 설정하였다. 먼저 국가 수준에서의 인권의 확산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국제 인권조약의 비준, 국제비정부단체 참여 수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변수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가령 국제회의의 참여 및 인권 조약의 비준은 해당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비정부단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다음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수준에서의 인권의 확산은 인권 관련 주요 국제회의 개최, 지역에서의 국가인권 기구 설립 및 국제인권조약 비준 누적 수를 통해 측정한다.

## 제1절 국가 수준에서의 인권제도 및 규범의 확산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분명한 목표로 삼는 국가 기구”로 정의할 수 있다(UN, 1993). 국가인권기구의 핵심적인 기능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받아서 조사를 진행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다.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고, 1990년대 들어 UN 인권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1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인권위원회 워크숍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원칙이 확립되었고, 이는 ‘파리 원칙’(The Paris Principles)으로 1993년 유엔총회에서 추인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공하였고, 이로써 국가인권기구는 국제 인권레짐의 핵심적 제도로 인정받게 되었다(Pegram 2010; 구정우 2007). 따라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한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국제 인권 규범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가설 1.1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한 국가에서 인권 상황이 개선된다.*

다음으로 국제 인권조약은 국제 인권레짐의 중추이므로(Wotipka and Tsutsui 2008), 인권 조약의 비준 여부는 국제 인권레짐 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인권 조약의 비준은 해당 조약이 국내 법질서에 유효한 법규범이 되며, 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법적 의무가 국제법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인권조약 비준 상황은 해당 국가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된다(정경수 2008). 가입국들이 해당 조약과 관련된 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조약 기구들이 그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 보고 내용에 대한 반박보고서(shadow report)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인권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국내외적인 모니터링

의 대상이 된다. 국제 인권 조약을 비준하는 것이 선진국들의 원조를 받기 위한 ‘보여주기’(window dressing)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분석 대상이 된 6개 인권 조약들은 전 세계적으로 비준한 비율이 최소 75%이상이다. 따라서 주요 인권 조약을 비준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강력한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설 1.2 보다 많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한 국가에서 인권 상황이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많은 학자들은 국제비정부단체가 세계 문화와 담론의 주된 매개자라고 주장한다. Boli는 국제비정부단체를 세계 문화의 ‘구조적 근간(structural backbone)’으로 평가하기도 했다(Boli 2005). 실제로 다양한 국제비정부단체(INGOs)들은 국가들이 인권 증진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인권 및 환경 관련 국제비정부단체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관련 국제비정부단체들은 지역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구 국가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Boli and Thomas 1997; Risse and Sikkink 1999). 실제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인권 워치(Human Rights Watch) 등의 인권 관련 국제비정부단체는 매년 전 세계 국가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인권 침해국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옹호 사업을 펼치는 등 국제인권레짐의 핵심적인 행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국제비정부단체의 네트워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전 세계적인 규범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chofer and Meyer 2005).

*가설 1.3 가입한 국제비정부단체가 많은 국가에서 인권 상황이 개선된다.*

## 제2절 지역 수준에서의 인권제도 및 규범의 확산

국제회의는 세계 문화가 확산되는 장으로 볼 수 있는데, 대규모 국제회의를 통해 인권과 같은 핵심적인 가치들이 공론화되기 때문이다. 국제비정부단체들은 주요 국제회의에서 정부를 강력하게 압박한다(Elliott 2007). 또한 국제회의에서의 활발한 정보 및 인적 교류는 세계 문화 확산의 중요한 기회가 된다. 중요한 인권회의를 계기로 인권조약에 가입하는 국가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제회의는 국가의 인권 정책 변화의 분수령이 되기도 한다(구정우 2007). 특히 1993년 비엔나 인권회의는 이후 인권 규범의 확산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던 대표적인 회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1996년의 제1회 아프리카 국가인권기구 컨퍼런스도 향후 아프리카의 인권 정책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가설 2.1 인권관련 주요 국제회의 개최 기간 및 그 직후에 인권 상황이 개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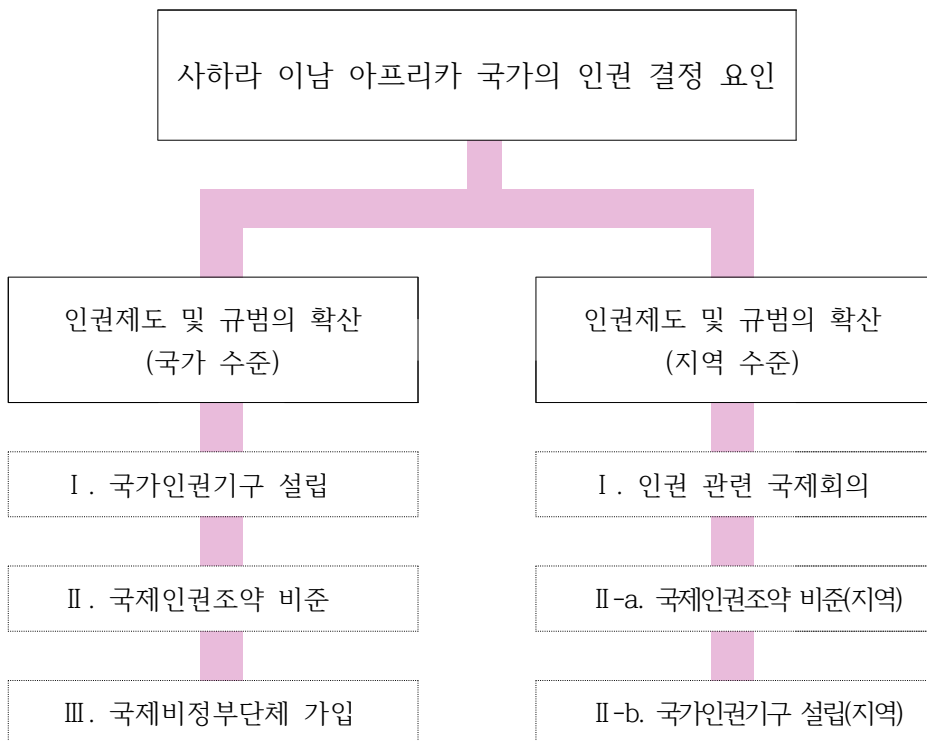
한편 세계사회이론가들은 규범의 확산을 규범 케스케이드(cascade) 및 유행(bandwagon)으로 개념화한다. 이는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의 행위를 모방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의 밀도(density)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Cole 2005; Wotipka and Ramirez 2007; 구정우 2007) 어떤 규범이 일정한 수 이상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지면, 다른 국가들도 자연스럽게 그 규범을 받아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에서의 규범의 확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ASEAN) 회원국들의 비간섭 원칙은 해당 지역에서 통용되는 규범으로 볼 수 있다(Smith 201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국제 인권조약을 비준하거나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한 국가가 많아질수록 국가들이 이를 의식하여 인권 개선을 꾀하게 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2.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인권조약을 더 많이 비준할수록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이 개선된다.

가설 2.2.b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가인권기구를 더 많이 설립할수록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이 개선된다.

아래 <그림 5>에는 지금까지 제시한 가설들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림 5> 인권 결정 요인의 구분



\* 통제변수: 내전 발발 여부, 1인당 국민소득, 인구



## 제4장 연구 자료 및 방법

### 제1절 종속 변수: 인권 상황

인권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사건 기반(events-based), 기준에 따른 평가(standards-based), 설문조사(survey-based)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사건 기반 자료는 실제 인권 침해 사건을 수집한 것이며, 각국의 인권위원회가 취합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사건 기반 자료는 보고 누락이나 과잉 보고에 의한 편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기준에 따른 평가 방식은 대부분의 인권지표들이 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프리덤하우스의 자유지수도 역시 기준에 따른 평가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는 미리 정해놓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특정한 기준에 따라 인권 침해의 빈도와 정도를 수치화 한 것이다. 단순화된 척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데에는 용이하지만, 국가 및 상황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가치 조사(world value survey), 유로 바로미터(euro barometer)와 같은 설문조사가 있다. 개인이 실제로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인권 침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에 따라 인권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Landman 2004).

인권지수 구축을 위한 오랜 노력에 힘입어 전 세계적인 인권 상황의 변화 흐름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구자들은 인권지수를 활용하여 통일된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측정하고 있다. 인권지수는 흔히 신체권(personal integrity rights),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측정 대상으로 한다. 신체권은 개인이 국가의 육체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적 테러 스케일(political terror scale: PTS)이다. 이 지표는 특히 고문, 강제 실종, 정치적 구금, 사법외적 살인에 주목하여 각국의 인권 상황을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있다(정진성 외 2011).

한편 미국의 시민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매년 발표하는 자유지수는 1973년부터 공포된 대표적인 시민·정치적 권리 지표이다(Bollen 1986). 여기서 정치적 자유는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고 법안에 표결하는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민적 자유는 자유롭게 발언하고, 프라이버시를 보장 받으며, 공정한 재판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진성 외 2011). 자유지수는 각각 7점 척도의 시민적·정치적 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계인권선언에서 기인한 것이다<sup>4)</sup>.

실제 평가 과정은 10개의 정치적 권리 관련 문항과 15개의 시민적 권리 관련 문항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에 의해 진행 된다.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문항들은 선거 과정, 정치적 다원주의와 참여, 정부 기능으로 나눌 수 있고, 시민적 권리와 관련된 문항들은 표현과 신념의 자유, 결사 및 조직 권리, 법치, 자율성 및 개인 권리로 구분된다. 평가자들은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각 문항에 대해 0-4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한다. 그리고 각 문항의 점수들을 집계해서 각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 상황에 대한 점수가 결정된다(Freedom House 2007). 구체적인 평가 척도는 아래 <표 2> 및 <표 3>와 같다

---

4)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편의를 위해 수치를 역으로 코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수가 높을수록 인권상황이 더 나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척도<sup>5)</sup>

1. 완전히 경쟁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선출된 공직자들이 국가를 통치하는 경우를 뜻하며,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2. 경쟁적 선거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선출 공직자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높은 경제적 불평등, 높은 문맹률, 높은 수준의 폭력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가.

3~5. 2에서 밝힌 이유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적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이며, 그 정도에 따라 3-5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받는다. 선거제도와 정치적인 반대당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상 국민들의 여론과는 달리 지배적인 정치 그룹 내의 파벌들이 집권을 독점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5점을 받은 국가는 선거제도의 효율성이 극도로 낮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6. 국민들이 새로운 집권당을 선택하고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경쟁적 선거 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정치지도자는 국민이 아니라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정치지도자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정치적 믿음은 종종 사회 전체의 근간을 이루는 종교적 신념과 연결된다(이슬람 국가들의 경우가 대표적).

7. 정치적 독재자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며, 이들은 대중여론이나 대중적 전통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다.

5) 정진성 외, 2011에서 발췌

<표 3>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의 시민적 자유에 대한 척도<sup>6)</sup>

1. 합리적이고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특히 정당한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출판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국가. 주요 미디어가 정부의 대중선동에 동원되지 않는 국가. 법원이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은 정치적 이유로 투옥되지 않으며, 개인의 교육권, 직업을 가질 권리, 종교를 가질 권리, 거주권 등이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국가. 대부분의 전통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2. 점수 1에 비교할 때 경찰과 사법부가 더욱 많은 권위주의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경우처럼 전체적으로 자유가 덜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

3~5. 양심수가 존재하고, 다양한 정도의 언론검열이 이루어지는 국가. 안보 담당 국가기관들에 의해 종종 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자유의 제한이 행사되는 정도에 따라 3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받는다.

6. 앞의 3~5에서 관찰되는 자유의 제한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기는 하나, 가정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 불법적인 시위가 벌어질 개연성이 남아 있는 경우. 불법 서적이 어느 정도는 통용되는 경우.

7. 사회 전반에 걸쳐 공포(fear)가 만연하고, 공적 공간이든 사적 공간이든 간에 표현의 자유가 거의 보장되지 않으며, 경찰국가의 정치 환경 속에서 정치적 반대의 표현이 허용되지 않고, 사형집행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국가.

6) 정진성 외, 2011에서 발췌

프리덤하우스의 자유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인권 지표이다. 그러나 지수 발표 초기에는 프리덤하우스의 보수적이며 미국 중심적 성향으로 인해 지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Landman 2004). 또한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각각에 지나치게 많은 세부요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을 통합지수로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Munck and Verkuilen 2002).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프리덤하우스의 단체 성향이 평가 과정에서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Gastil 1990). 또한 세부요인들을 종합해서 통합지수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지수 구성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자유지수만의 고유한 문제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프리덤하우스에서 수십 년 동안 일관된 기준으로 지표를 발표하면서 자유지수는 관련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인권지표들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도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첫째, 정의와 측정의 문제가 있다. 다차원성을 갖는 인권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인권의 다양한 차원은 고려되지 못한다. 또한 부여되는 점수의 자의성에 대한 비판도 있다. 둘째, 인권 지표가 기반을 두고 있는 경험 자료들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대부분의 글로벌 인권 지표는 연례 인권 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지는데, 이와 같은 2차 자료의 완결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총합 지표로서의 인권지표의 한계가 지적된다. 이는 하위 지표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단일한 수치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정진성 외 2011). 또한 평가자의 판단 과정에 정보 접근 가능성, 각종 이해관계, 자국과 평가 대상국의 관계, 평가자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Bollen 1986).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인권지표가 무용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받아들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인권 상황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인권 개선의 중요한 출

발점이 된다. 그리고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평가 결과가 발표되면서 인권 지표의 일관성과 타당성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다. 학계에서도 여러 인권 지표들을 중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보다 종합적인 인권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프리덤 하우스 자유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정치적 테러 스케일은 시민·정치적 자유 가운데 일부 영역만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국가의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보호 상황만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7점 척도인 정치적 자유 지수와 시민적 자유 지수의 평균값을 해당 해의 인권 지수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들의 변화가 종속변수에 반영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타임 래그를 1년 반영하였다.

## 제2절 독립 변수: 인권 규범과 제도

### 1) 국가 수준에서의 인권제도 및 규범의 확산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정보는 여러 자료들을 취합하여 작성하였다. 우선 아프리카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Network of Africa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홈페이지를 통해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의 명칭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에서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에 부여한 등급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Koo의 연구에 제시된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년도를 참고하였다(Koo 2009). 마지막으로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서 부여한 등급이 A인 국가 즉,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파리원칙을 준수하는 국가들만 국가인권기구 설립 국가로 간주하였다. 이 등급이 A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인권기구가 제

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계 분석 과정에서 각국이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한 해부터 1의 값을 부여하였고, 나머지 연도는 0으로 코딩하였다. <부록 5>에는 사하라 이남 국가들 전체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관련 정보를 제시하였다.

한편 인권조약 비준 여부는 주요 국제 인권 조약을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 대상이 된 6개의 주요 국제 인권 조약은 이행 감독기구 (monitoring bodies)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sup>7)</sup> 감독기구의 감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다른 조약에 비해 비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Wotipka and Tsutsui 2008). 지표의 값은 해당 인권 조약을 비준한 년도를 기준으로 1점을 부여하였고, 모두 6개 조약의 비준여부를 가지고 종합 점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국이 가입한 국제 비정부단체의 수는 국제조직연합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제조직 연감(*Year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매년 각국의 국민들이 가입한 국제 비정부단체의 수를 집계한 것이다. 이 변수를 분석 모델에 포함시킨 것은 비정부기구가 국제적인 규범의 중요한 매개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국제비정부단체(INGOs)들은 국가들이 인권 증진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제인권레짐을 강화시킨다.

---

7) 인종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시민정치적권리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경제사회문화적권리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이 분석 대상이다. 이행 감독기구가 있는 국제인권조약 가운데, 이주노동자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은 비준국가 많지 않고,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2008년에야 발효되었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지역 수준에서의 인권제도 및 규범의 확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인권관련 주요 국제회의는 1993년 비엔나 인권회의와 1996년 제1회 아프리카 국가 인권기구 컨퍼런스를 선정하였다. 비엔나 인권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 규범의 확산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대표적인 회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1996년 아프리카 국가인권기구 컨퍼런스는 첫 회의로서 향후 아프리카 인권 레짐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주요 인권회의가 열렸던 해와 그 이듬해에 1의 값을 부여하였고 나머지는 0으로 코딩하였다. 한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비준 및 국가인권기구 설립 누적 숫자를 활용하여 인권제도와 규범의 밀도(density)를 측정하였다. 해당 연도에 각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된 국가의 수를 집계하여 누적 숫자를 계산하였다.

## 3) 통제변수

1인당 국민소득, 내전 발발 여부, 인구는 통제 변수로 회귀모델에 포함시켰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해당 국가의 경제적인 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세계 개발 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 WDI)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내전 더미 변수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하는 무력 충돌 자료(armed conflict data set)를 활용했는데, 이 자료에서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규모 전쟁과 2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소규모 충돌을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충돌과 대규모 충돌을 구분하지 않고 내전 발발 여부 더미 변수로 활용하였다. 인구 변수는 세계 개발 지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편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 변수는 정상분포와 유사하게 조정하기 위해 자연로그 값을 취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의 출처는 아래 <표 4>와 같다<sup>8)</sup>.

---

8) 기대 수명 및 교육 이수 기간과 같이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은 분석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폴리티 IV는 각국의 민주주의 통치 수준을 -10에서



<표 4> 활용 변수 목록

변수	출처
<b>종속 변수</b>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	Freedom House
<b>독립 변수</b> <b>인권제도 및 규범의 확산(국가 수준)</b> 국가인권기구 설립(더미) 국제인권조약 비준 국제비정부단체 가입 <b>인권제도 및 규범의 확산(지역 수준)</b> 국가인권기구 설립(지역 누계) 국제인권조약 비준(지역 누계) 인권관련 국제회의(더미)	아프리카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 Koo(2009) <a href="http://www.bayefsky.com">http://www.bayefsky.com</a> 국제기구연감 아프리카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 Koo(2009) <a href="http://www.bayefsky.com">http://www.bayefsky.com</a> UN 인권회의(1993), 제1회 아프리카 국가인권기구 컨퍼런스(1996)
<b>통제 변수</b> 내전 발발 여부(더미) 1인당 국민소득(로그) 인구(로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WDI 2010 WDI 2010

10의 범위에서 측정된 지수인데, 인권결정요인 관련연구에서도 빈번히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시민·정치적 권리지수와 개념적으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으므로(0.81) 독립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독립 변수 가운데 자료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가령, 국제비정부단체의 2008년 수치를 2009년 수치로 대체했고, 상투메프린시페, 소말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년, 2005년, 2009년 자료를 활용했다.

### 제3절 연구 방법

1980년부터 2009년까지의 분석기간은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인권 제도와 규범의 확산은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1년에는 아프리카 인권헌장(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이 제정되었고, 1986년에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CHPR)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1990년대도 이어졌는데, 1993년에 인권 모니터링을 위한 아프리카 국가 간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1996년에는 아프리카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가 설립 되어 카메룬에서 1회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이와 같은 아프리카 지역 인권레짐 형성의 역사를 고려하여 1980년도부터 2009년까지 30년을 연구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연도 변화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패널 자료를 활용한다. 패널 자료는 횡단자료(cross-section data)와 시계열 자료(time-series data)를 통합한 자료이다. 패널 분석은 시간 경과에 따른 횡단 관측치 간의 변화 추이를 고려할 수 있고, 개체들의 관측 불가능한 이질성(heterogeneity)을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설명변수 간의 공선성을 줄일 수 있고 추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Gujarati and Porter 2009; 이영훈 2001; 서진교 2001; 민인식 외 2009; 전승훈 외 2004).

그런데 패널 데이터는 횡단면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오차항에 이분산성이나 자기 상관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패널 데이터를 통상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OLS)으로 추정하게 되면 패널 개체와 시간에 따라 오차항의 분산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동분산성의 가정이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패널 개체의 오차항은 상관관계가 없어야 하며, 동시에 한 개체의 서로 다른 시점의 오차항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하

지 않아야 한다는 가정도 지키기 어렵다. 한편 오차항과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에도 위배된다. 이와 같은 기본 가정들이 위배되면 추정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패널 데이터에서는 일반적인 최소자승법을 적용할 수 없다(Gujarati and Porter, 2009; 민인식 등 2009).

패널 모형을 분석하는 방법은 오차항을 고정된 상수로 볼 것인가 확률 변수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으로 나눌 수 있다. 오차항이 각 관측치와 시간에 따라 고정된 더미변수 역할을 하는 경우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한다.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각 횡단면 단위가 자신의 특성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회귀모형의 절편이 서로 다르게 결정된다. 반면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오차항을 확률변수로 가정한다. 이 경우 임의적으로 분포하는 개인별 효과가 추정량의 불편성과 효율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공분산 행렬에 개인별 효과를 포함시킨 후 일반화 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s:GLS)으로 추정하게 된다(Gujarati and Porter, 2009; 이영훈 2001; 서진교 2001; 민인식 등 2009).

즉,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각 횡단면 단위가 자신의 고정된 절편 값을 가진다. 반면 확률효과 모형에서 절편은 모든 절편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오차성분은 개별 절편의 평균값으로부터의 무작위 편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패널 개체의 특성에 따라 분석 모형을 선정하게 되는데 표본 내의 효과에 기초하여 추론 한다면 고정효과 모형,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 추론한다면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하다(Gujarati and Porter 2009; 이영훈 2001; 민인식 등 2009).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국가 패널 데이터는 패널 개체가 모집단 자체이다. 또한 시간 변동(time-variant) 변수가 주로 활용되므로 고정효과 모델을 적용하였다.

## 제5장 분석 결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 결정요인

<표 5>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5>에는 모두 네 개의 모형이 제시되어 있는데 모형 구성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모형 1에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인권의 확산과 관련된 변수들만을 통제하여 각각의 변수들의 독립적인 효과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모형 2,3,4에 각각 지역 수준에서의 인권의 확산과 관련된 변수들을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각 변수들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모형 2에는 인권관련 국제회의 변수를 추가하였고, 모형 3에 추가한 지역에서의 인권조약 비준 변수는 국가에서의 인권조약 비준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국가 인권조약 비준 변수를 제외하고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모형 4의 지역에서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변수는 국가 및 지역에서의 인권조약 비준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두 변수를 빼고 모형을 구성하였다.

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 국가 수준에서의 인권의 확산과 관련된 변수들 가운데 국가인권기구 설립, 국제인권조약 비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 < .001$  수준) 즉,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고 더 많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한 국가일수록 인권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국제비정부단체 가입 변수는 인권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입한 국제비정부 단체의 수가 전반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수준에서의 인권 제도 및 규범의 확산과 관련된 변수들 가운데에는 국가 인권 기구 설립 및 국제인권조약 비준 지역 누계 변수가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했다.( $p < .001$  수준) 그리고 인권관련 국제회의는 모형 2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모형 3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했다. 한편 통제 변수 가운데

에는 내전 변수가 일관성 있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 < .001$  수준) 이는 연구 대상 기간 동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내전이 빈번히 발생했고, 일반적으로 내전의 발생은 인권 상황의 악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가 인권 상황의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는 선행 연구들과의 큰 차이점이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인권 제도와 규범의 확산이 실제 인권 상황의 개선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국가 수준에서의 인권 제도 및 규범의 확산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수준에서의 인권 제도 및 규범의 확산에서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전 세계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들에서는 디커플링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인권 제도와 규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대상 지역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디커플링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표 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권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2	모형3	모형4
	Coef.	Coef.	Coef.	Coef.
<b>인권제도 및 규범의 확산 (국가 수준)</b>				
국가인권기구 설립(더미)	.67*** (.11)	.68*** (.11)	.56*** (.11)	.51*** (.11)
국제인권조약 비준	.25*** (.03)	.24*** (.03)		
국제비정부단체 가입	-.00 (.00)	-.00 (.00)	-.00 (.00)	.00 (.00)
<b>인권제도 및 규범의 확산 (지역 수준)</b>				
인권관련 국제회의(더미)		.25* (.10)	.14 (.10)	.34** (.10)
국제인권조약 비준(지역누계)			.01*** (.00)	
국가인권기구 설립(지역누계)				.07*** (.01)
<b>통제변수</b>				
내전 발발 여부(더미)	-.51*** (.08)	-.52*** (.08)	-.59*** (.08)	-.52*** (.08)
1인당 국민소득(로그)	.14 (.10)	.16 (.10)	.27** (.09)	.18 (.10)
인구(로그)	.40* (.20)	.43* (.20)	-1.31*** (.30)	.04 (.27)
상수	-4.67 (2.99)	-5.30 (3.00)	19.88*** (4.44)	.78 (4.09)
R-sq within	0.32	0.32	0.34	0.30
R-sq between	0.00	0.00	0.10	0.27
R-sq overall	0.06	0.06	0.10	0.26
N of countries	48	48	48	48
N	1,417	1,417	1,417	1,417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p<.05, \*\*p<.01, \*\*\*p<.001

## 제6장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인권 제도와 규범의 확산이 실제 인권 상황의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국제인권조약 비준 변수가 유의미했다는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인권 확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실제 인권 개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지리적 위치, 식민지 경험, 복잡한 종족 구성 때문에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게스트 2004). 즉, 국제 인권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며,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수준에서의 인권 제도와 규범의 확산이 인권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지역 인권레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 인권기구는 개별국가들의 다양한 인권보호 장치들을 보완하여 국제인권규범의 보다 효과적인 이행을 돕는다(Baek 2011). 따라서 지역인권기구는 풀뿌리 수준에서의 인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규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지역 인권기구의 활동이 활발하고, 이는 인권 개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1981년 채택되어 1986년 발효된 아프리카 인권 헌장은 아프리카 지역 인권레짐의 기반이 되어 왔다. 또한 1986년 설립된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와 2006년 설립된 아프리카 인권재판소는 헌장의 효과적인 이행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다(Mugwanyam 1999). 이와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인권레짐은 지역 수준에서의 인권 확산이 실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권 개선은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과 후퇴를 반복하며, 그 과정에서 내부·외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인권의 확산이라는 현상을 세계사회이론을 동원하여 설명하고

인권의 확산이 실제 인권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세계사회이론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 연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 제도와 규범의 확산이 실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 결과는 기존의 디커플링에 대한 설명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인권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제3세계의 발전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로 발전시킬 수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극심한 빈곤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 해당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이다. 그렇지만 변수의 선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국가의 일반적인 속성에 해당되는 특성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을 아시아, 중남미의 다른 저개발국가로 확대하거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간 비교 연구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지표만 연구에 활용한 것이다. 객관적 지표가 실제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인권 상황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최근 학계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정진성 외 201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남아프리카 민주주의연구소와 미국 미시간대학교 등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아프로바로미터 서베이 결과가 주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바로미터와 같은 주관적 인권 지표를 활용한다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와의 비교 연구가 가능하며, 인권 결정의 보다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문]

- 게스트, 로버트, 2004. 『아프리카, 무지개와 뱀파이어의 땅』(The Shackled Continent: Africa's Past, Present and Future)  
김은수 옮김
- 구정우, 2007, “세계사회와 인권: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1978-2004.”  
『한국사회학』 41
- 민인식, 최필선, 2009,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 서진교, 2001, “패널자료 분석방법”, 『농촌경제』 제24권 제2호
- 이연호, 2009, 『발전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영훈, 2001, “선형패널자료모형에 관한 문헌연구”, 『계량경제학보』  
제15권 제1호
- 임현진, 2006, “한국의 발전 경험과 대안 모색: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아서”, 『한국사회학』 제40집 1호
- 전승훈, 강성호, 임병인, 2004, “선형패널자료 분석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통계연구』 9권 2호
- 정경수, 2008, “한국의 인권조약 비준, 가입의 성취와 과제”, 『안암  
법학』 vol. 26
- 정진성, 공석기, 구정우, 2010,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영문]

- Baek, Buhm-Suk, 2011, “Do We Need Reg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2호
- Boli, John, 2005, “Contemporary Developments in World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 46 no. 5-6
- Boli, John and George M. Thomas, 1997, “World Culture in

- the World Polity: A Century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2, No. 2.
- Bollen, Kenneth A, 1986, “Political Rights and Political Liberties in Nations: an Evaluation of Human Rights Measures, 1950 to 1984”, *Human Rights Quarterly* vol. 8, no. 4
- Clark, Rob, 2010, “TECHNICAL AND INSTITUTIONAL STATES: Loose Coupling in the Human Rights Sector of the World Polity”,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ume 51, Issue 1
- Cole, Wade M, 2005, "Sovereignty Relinquished? Explaining Commitment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1966-1999."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0, No. 3.
- , 2012, “Human Rights as Myth and Ceremony? Re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Treaties, 1981-2007”,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17, No. 4
- Elliott, Michael A, 2007, “Human Rights and the Triumph of the Individual in World Culture”, *Cultural Sociology* vol. 1 no. 3
- Freedom House, 2007, “Freedom in the World 2006 Methodology”
- Gastil, Raymond Duncan, 1990, “The Comparative Survey of Freedom: Experiences and Suggestions”,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25. no. 1
- Gujarati, Damodar and Dawn Porter, 2009, *Basic Econometrics, Fifth edition*, New York: McGraw-Hill.

- Hafner-Burton, Emilie and Kiyoteru Tsutsui, 2005, "Human Rights in a Globalizing World: The Paradox of Empty Promis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 5
- Hafner-Burton, Emilie, Kiyoteru Tsutsui and John Meyer, 2008,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Politics of Legitimation: Repressive States and Human Rights Treaties", *International Sociology* vol. 23 no. 1
- Hathaway, O, 2002, "Do Treaties Make a Difference?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 Problem of Compliance", *Yale Law Journal* 111
- , 2007, "Why Do Countries Commit to Human Rights Treat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1
- Henderson, Conway W., 1991, "Conditions Affecting the Use of Political Repress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5(1)
- Keith, L. C, 1999,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Does it Make a Difference in Human Rights Behavior?" *Journal of Peace Research* 36 (1)
- Koo, Jeong-Woo and F. O. Ramirez, 2009, "National Incorporation of Global Human Rights: Worldwide Adopti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1966-2004." *Social Forces*. 87(3).
- Landman, Todd, 2004, "Measuring Human Rights: Principle, Practice, and Policy." *Human Rights Quarterly* 26
- Meyer, John W., John Boli, George M. Thomas, and Francisco O. Ramirez, 1997, "World Society and Nation-Stat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
- Mitchell Neil J., James M. McComick, 1988, "Economic and

- Political Explan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orld Politics* 40
- Mugwanyam, George William, 1999, “Realizing Universal Human Rights Norms Through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Reinvigorating the African System”, *Indian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35
- Munck, Gerardo L. and Jay Verkuilen, 2002,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Democracy: Evaluating Alternative Indic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002; 35
- Neumayer, Eric, 2005, “D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mprove Respect for Human Righ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9(6)
- Park, Han S, 1987, "Correlates of Human Rights: Global Tendencies.", *Human Rights Quarterly* 9
- Pegram, Thomas. 2010. “Diffusion Across Political Systems: The Global Spread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Human Rights Quarterly* Volume 32(3)
- Poe, Steven C. and C. Neal Tate. 1994. "Repression of Human Rights to Personal Integrity in the 1980s: A Global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
- Risse, Thomas and Kathryn Sikkink, 1999, “The socializ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to domestic practices: introduction” in *The Power of Human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ofer, Evan and John W. Meyer, 2005, “The Worldwid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0, No. 6
- Smith, Heather M, 2012,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Regional Diffusion”, Prepared for the Fifth Pan

- European Conference o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Hague, Netherlands
- Smith, Jackie, Melissa Bolyard and Anna Ippolito, 1999, "Human Rights and the Global Economy: A Response to Meyer", *Human Rights Quarterly* 21.1
- Soysa, de Indra and Krishna Chaitanya Vadlamannati, 2011, "Does Being Bound Together Suffocate, or Liberate? The Effects of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Globalization on Human Rights, 1981-2005", *KYKLOS*, Vol. 64
- UN OHCHR, 1993, "Fact Sheet No.19,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Wotipka, Christine Min and F. O. Ramirez, 2008, "World Society and Human Rights: An Event History Analysis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p. 303-343 in B. A. Simmons, F. Dobbin and G. Garrett(eds.). *The Global Diffusion of Markets and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tipka, Christine Min and Kiyoteru Tsutsui, 2008, "Global Human Rights and State Sovereignty: Stat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1965-2001", *Sociological Forum Volume* 23, Issue 4
- Yoo, Eunhye, 2011,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neoliberalism, and women's social rights, 1984-2004",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2011.
- Zanger, S. C, 2000, "A Global Analysis of the Effect of Regime Changes on Life Integrity Violations, 1977-1993", *Journal of Peace Research* 33.

부록 1. 1990년대의 대표적인 인권 지수 개선/악화 국가 목록

구분	국가명	1980년대 평균(A)	1990년대 평균(B)	대비(B/A)
	Benin	1.2	5.5	4.7
	Sao Tome and Principe	1.3	6.0	4.5
	Mali	1.6	4.8	3.0
	Cape Verde	2.1	6.1	2.9
	Malawi	1.5	4.0	2.6
	Ethiopia	1.1	2.9	2.6
개선	Mozambique	1.4	4.7	2.6
	Congo, Rep.	1.5	3.3	2.2
	Guinea-Bissau	1.7	3.6	2.1
	South Africa	2.5	5.2	2.1
	Central African Republic	1.8	3.8	2.1
	Seychelles	2.0	4.1	2.1
	Sudan	2.7	1.0	0.4
	Gambia	4.9	3.5	0.7
악화	Nigeria	3.4	2.5	0.7
	Liberia	2.8	2.1	0.8
	Sierra Leone	3.0	2.4	0.8

\*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 기준

부록 2. 2000년대의 대표적인 인권 지수 개선/악화 국가 목록

구분	국가명	1990년대 평균(A)	2000년대 평균(B)	대비(B/A)
개선	Burundi	1.5	3.0	2.0
	Kenya	2.2	4.2	1.9
	Sierra Leone	2.4	4.3	1.8
	Mauritania	1.8	2.9	1.6
	Ghana	3.8	6.1	1.6
	Liberia	2.1	3.3	1.6
	Tanzania	2.9	4.4	1.5
	Nigeria	2.5	3.8	1.5
	Niger	3.0	4.4	1.5
악화	Eritrea	2.7	1.6	0.6
	Zimbabwe	3.1	1.8	0.6
	Cote d'Ivoire	2.8	2.3	0.8
	Central African Republic	3.8	3.1	0.8
	Swaziland	2.6	2.2	0.8

\*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 기준

### 부록 3. 분석 대상 국가 목록

Angola	Madagascar
Benin	Malawi
Botswana	Mali
Burkina Faso	Mauritania
Burundi	Mauritius
Cameroon	Mozambique
Cape Verde	Namibia
Central African Republic	Niger
Chad	Nigeria
Comoros	Republic of the Congo
Côte d'Ivoire	Rwanda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Senegal
Djibouti	Seychelles
Equatorial Guinea	Sierra Leone
Eritrea	Somalia
Ethiopia	South Africa
Gabon	Sudan
Gambia	Swaziland
Ghana	São Tomé and Príncipe
Guinea	Tanzania
Guinea-Bissau	Togo
Kenya	Uganda
Lesotho	Zambia
Liberia	Zimbabwe



#### 부록 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인권조약 비준현황

Country	CERD	ICCPR	ICESCR	CEDAW	CAT	CRC
Angola	-	1992	1992	1986	-	1990
Benin	2001	1992	1992	1992	1992	1990
Botswana	1974	2000	-	1996	2000	1995
Burkina Faso	1974	1999	1999	1987	1999	1990
Burundi	1977	1990	1990	1992	1993	1990
Cameroon	1971	1984	1984	1994	1986	1993
Cape Verde	1979	1993	1993	1980	1992	1992
Central African Rep	1971	1981	1981	1991	-	1992
Chad	1977	1995	1995	1995	1995	1990
Comoros	2004	s2008	s2008	1994	s2000	1993
Côte d'Ivoire	1973	1992	1992	1995	1995	1991
Dem Rep of the Congo	1976	1976	1976	1986	1996	1990
Djibouti	s2006	2002	2002	1998	2002	1990
Equatorial Guinea	2002	1987	1987	1984	2002	1992
Eritrea	2001	2002	2001	1995	-	1994
Ethiopia	1976	1993	1993	1981	1994	1991
Gabon	1980	1983	1983	1983	2000	1994
Gambia	1978	1979	1978	1993	s1985	1990
Ghana	1966	2000	2000	1986	2000	1990
Guinea	1977	1978	1978	1982	1989	1990
Guinea-Bissau	2010	2010	1992	1985	s2000	1990
Kenya	2001	1972	1972	1984	1997	1990
Lesotho	1971	1992	1992	1995	2001	1992
Liberia	1976	2004	2004	1984	2004	1993
Madagascar	1969	1971	1971	1989	2005	1991
Malawi	1996	1993	1993	1987	1996	1991

Country	CERD	ICCPR	ICESCR	CEDAW	CAT	CRC
Mali	1974	1974	1974	1985	1999	1990
Mauritania	1988	2004	2004	2001	2004	1991
Mauritius	1972	1973	1973	1984	1992	1990
Mozambique	1983	1993	-	1997	1999	1994
Namibia	1982	1994	1994	1992	1994	1990
Niger	1967	1986	1986	1999	1998	1990
Nigeria	1967	1993	1993	1985	2001	1991
Republic of the Congo	1988	1983	1983	1982	2003	1993
Rwanda	1975	1975	1975	1981	2008	1991
Sao Tome and Principe	s2000	s1995	s1995	2003	s2000	1991
Senegal	1972	1978	1978	1985	1986	1990
Seychelles	1978	1992	1992	1992	1992	1990
Sierra Leone	1967	1996	1996	1988	2001	1990
Somalia	1975	1990	1990	-	1990	s2002
South Africa	1998	1998	s1994	1995	1998	1995
Sudan	1977	1986	1986	-	s1986	1990
Swaziland	1969	2004	2004	2004	2004	1995
Togo	1972	1984	1984	1983	1987	1990
Uganda	1980	1995	1987	1985	1986	1990
United Rep of Tanzania	1972	1976	1976	1985	-	1991
Zambia	1972	1984	1984	1985	1998	1991
Zimbabwe	1991	1991	1991	1991	-	1990

출처: <http://www.bayefsky.com/2012.3.5> 기준(2012.5.6 접속)

\* 연도 옆에 S로 표기한 국가는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 남수단 제외

부록 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현황

국가명	기구 이름	설립 년도	ICC 등급
Angola	Provedor di Justiça di direitos		
Benin	Commission Béninoise des Droits de l'Homme	1989	C
Botswana*		1997	
Burkina Faso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2001	B
Burundi	Commission Nationale Indépendante des Droits de l'Homme Frère Emmanuel		
Cameroon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Freedoms	1991	B
Cape Verde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Chad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1995	A(R)
Republic of Congo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2002	
Cote d'Ivoire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1996	
DR Congo	Observatoire National des Droits de l'Homme		A(R)
Djibouti		1999	
Ethiopia	Ethiop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03	
Gabon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1999	
Gambia*		1999	
Ghana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Administrative Justice	1993	A
Guinea Bisau	Commissao Nacional Para os Dereitos Humanas		
Guinea	Observatoire National de la Democratie et des Droits de l'Homme		
Kenya	Kenya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1996	A
Liberia	Independent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1997	
Madagascar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2000	C

국가명	기구 이름	설립 년도	ICC 등급
Malawi	Malawi Human Rights Commission	1995	A
Mali	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2003	
Mauritania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1998	
Mauritius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2001	A
Namibia	Office of the Ombudsman	1990	A
Niger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CNDHLF)	1999	A
Nigeri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1996	B
Rwanda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a Personne	1992	A
Senegal	Comité sénégalais des droits de l'homme	1997	A
Sierra Leone	Human Rights Commission of Sierra Leone	1995	A
South Africa	South African Human Rights Commission	1995	A
Sudan*		1994	
Swazil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Swaziland		
Tanzania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	2001	A
Togo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1987	A
Uganda	Uganda Human Rights Commission	1995	A
Zambia	Human Rights Commission	1997	A
Zimbabwe	Zimbabwe Human Rights Commission	1997	

출처: 아프리카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 Koo(2009)

\* 표시는 아프리카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 회원 국가가 아님. ICC 등급이 A인 경우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파리원칙을 준수하는 국가, A(R)은 서류 제출 미비로 인한 유보 상태, B는 옅저버 등급, C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 해당

## Abstract

# Determinants of Human Rights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Kim, Dae-Wook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ansion of the human rights regime and the improvement in human rights practice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Over the past few decades, a considerable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determinants of human rights. The focus of these researches can be classified into two main group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ome scholar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ternal factors for improvement in human rights practice. The most important point of their argument is that internal factors like economic development affect the human rights practice. On the contrary, researches which stress external factors have a tendency of giving priority to world culture.

This study bases itself on the world polity theory. According to this theory, nation-states are embedded in world and influenced by world culture. In this regard, states' commitment to human rights norms is also the result of global expansion of human rights culture. A critical question is whether the expansion of the human rights norms and institution have caused an actual improvement in human rights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is question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wo hypotheses, which are on state and regional level. Hypotheses on state level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practice and state level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 participation in INGOs. And hypotheses on regional level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practice and regional level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major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human rights, regional cumulative number of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dependent variable is freedom house index which measures human rights practice worldwide. The control variables are GDP per capita, civil war and population. It covers the time series data from 1980 to 2009. And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panel data used in this study, fixed effects model is applied.

The result shows that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INGOs membership variable is insignificant. Among the regional level variables, regional cumulative number of establishment of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re significant. And civil war variable is consistently significant among the control variable.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expansion of the human rights norms and institution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have caused an actual improvement in human rights practice. The result of the researches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show decoupling between expansion of human rights and improvement of human practice.

**Keywords:** Human Rights, Expansion of the Human Rights Regime, Sub-Saharan Africa, Determinants of Human Rights, World Polity Theory, decoupling

***Student Number*** : 2010-20094